

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- 649호

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(KDS 47 90 10)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 월 29 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(KDS 47 90 10)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개정 사유

철도 설계 관련 기준들 간의 중복성 해소 및 정비를 위해 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의 제2장 고속·일반·광역철도를 철도 설계기준(KDS 47 00 00)으로 일원화 하여, 「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(KDS 47 90 10)」를 부분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(KDS 47 90 10)

- 안전강화, 규제완화 및 최신기술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한 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의 제2장 고속·일반·광역철도 내용의 일부 수정
 - 일반철도 구간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철도 구간에 선로 안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선로 쉼 구간의 보행로에 대한 높이(2.1m) 확보기준을 추가하고, 대피공간 내에 다른 시설물이 침범할 수 없게 명시
 - 안전시설 설치 목적을 열차가 교량 하부로 낙하하거나 인접 선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방호시설 개념으로 명확화
 - 고상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철도안전법

개정('18.8) 내용을 준용하도록 문구 수정하여 안전강화

- 설비의 종류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기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복합 기능을 가진 첨단설비의 도입근거 마련
- 방재구난지역 설치 터널의 최소길이(1킬로미터 이상) 명시

○ 기준 목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및 설계기준 작성양식 통일

- 기준에서 제시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명시하고, “철도시설”의 범위를 “고속·일반·광역철도”로 한정하여 명확화
- 설계기준 필수항목 추가, 서술형식 통일 및 수정 등을 통한 양식 통일 및 이에 따른 필요 용어 및 인용 기준 등 내용 추가

3. 의견제출

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(KDS 47 90 10)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5.20(월)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제·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		(찬·반 의견과 이유)

○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(전화 044-201-4726, 팩스 ***-***-****)
- 전자우편: jopd9242@korea.kr